

2020년 인천지역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2020.06

연구수행기관: ① 일신회계법인



차 례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목적1
- 2.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1

II.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이해

- 1. 기준의 목적2
- 2.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총칙2
- 3. 적정원가의 산정3
- 4. 적정투자보수의 산정5
- 5. 요금 산정6

III. 2020년 공급비용 산정

- 1. 2019년 실적 및 2020년 회사제시8
- 2. 2020년 공급비용 조정8

IV. 최종 용도별 소비자가격 산정

- 1. 기본요금21
- 2. 추정판매물량22
- 3. 평균 사용량 공급비용 결과28

V. 수지격차 완화 방안

- 1. 수지격차 발생 특징30
- 2. 요금 조정 방안32

표 차 례

<표 1> 2019 승인 대비 2020 회사 제시	8
<표 2> 2020 회사제시 대비 조정	9
<표 3> 인건비 조정	10
<표 4> 회사별 급·상여 및 수당 조정	10
<표 5> 회사별 퇴직급여 조정	11
<표 6> 투자계획 및 감가상각비 조정	11
<표 7> 회사별 센터수수료 조정	14
<표 8> 수도권 지역 종사자별 세대수(2019년 실적)	14
<표 9> 인천시 종사자별 세대수(2020년 추정)	14
<표 10> 회사별 지급수수료 조정	15
<표 11> 회사별 광고선전비 조정	15
<표 12> 영업비용 계정별 조정 금액	16
<표 13> 요금기저 조정	18
<표 14> 법인세비용 조정	18
<표 15>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 경감액	18
<표 16> 투자비 정산	18
<표 17>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금 정산	19
<표 18> 계량기 교체비 정산	19
<표 19> 판매량 정산	20
<표 20> 미인상분 환원	20
<표 21> 전년도 오류 조정	20
<표 22> 기본요금 전년 실적 대비 증감	21
<표 23> 회사별 1~4월 실적 판매량	22

<표 24> 회사별 5~12월 추정 판매량	23
<표 25> 인천도시가스(주) 산업용 판매량 조정	24
<표 26> (주)삼천리 산업용 판매량 조정	24
<표 27> 인천도시가스(주) 주택용 판매량 조정	25
<표 28> (주)삼천리 주택용 판매량 조정	25
<표 29> 인천도시가스(주) 용도별 연간 추정 판매량	26
<표 30> (주)삼천리 용도별 연간 추정 판매량	26
<표 31> 인천시 용도별 연간 추정 판매량	27
<표 32> 판매량 변동에 따른 사용량 공급비용 증감	28
<표 33> 용도별 소매마진	28
<표 34> 2020년 평균 사용량요금 조정 (부피기준)	29
<표 35> 회사별 인정공급비용과 회수금액 간 차이	30
<표 36> 용도별 소매마진 및 회사별 추정판매물량 구성	31
<표 37> 수도권 주택용 요금 변천	32
<표 38> 수도권 주택용 요금 비교(현행기준)	33
<표 39> 수도권 산업용 요금(현행기준)	33
<표 40> 산업용 요금 인하 수준에 따른 수지격차 완화 효과	34
<표 41> 산업용 요금 인하 수준에 따른 회사별 평균소매마진 격차	36
<표 42> 산업용 구간별 판매량	37
<표 43> 산업용 판매량 구간별 차등요금안	37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목적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가스의 공급규정) ①항에 의거하여, 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그리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됨
- 도시가스 소비자 권익보호와 공급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금년 4월에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202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더불어 인천광역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평균소매마진 대비 인정공급비용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이윤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용도별 소매공급비용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금번 연구에 적용된 기준은, 금년 4월에 개정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이하 『공급비용 산정기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실무편람』, 『도시가스사업 회계처리기준』, 『도시가스사업 회계처리기준 및 지역별 회계처리준칙』 등임

2.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 공급비용 대비 실적분석 및 검토(2019년도)
- 적정원가의 산정
- 도시가스 공급열량 검토 및 산출
- 용도별 공급비용 산출
-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 경감조치에 따른 차액 공급비용 반영
- 기타 인천광역시 정책적 과제 검토 등

II.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이해

1. 기준의 목적

- 『공급비용 산정기준』은 시·도지사가 소비자 이익증진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공급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총칙

- 도시가스 최종 소비자 요금은 도매요금에 총괄원가를 기초로 한 공급비용단가(소매공급비용)를 더하여 책정함
-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은 사업자가 가스를 공급하는데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 금년 4월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시·도별 여건에 따라 총평균방식 또는 개별 사업자별로 산정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정 전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자가 2개 이상일 경우 평균방식으로 공급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별 사업자로 산정하도록 하였음
 -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내 모든 시·도에서 개별 사업자로 공급비용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이 단일 사업자를 가지고 있음
-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회계분리에 의해 해당지역의 공급비용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공급비용의 산정기간은 1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며, 공급비용은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하여 적용함

3. 적정원가의 산정

가. 적정원가 산정원칙

- 적정원가는 도시가스의 공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영업비용 합계액에 영업외비용·수익을 가감하고 법인세를 가산하며, 비경상적인 특별손익은 반영하지 않음
- 다만, 도시가스 공급방식의 변경 등 정책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유휴제조설비의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원가에 반영할 수 있음

나. 인건비 산정

- 인건비는 도시가스 공급관리·판매 및 일반관리 부문별 적정인원수와 인원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급여, 상여금, 제수당, 퇴직급여와 잡급 등이 인건비에 포함됨

다. 감가상각비 산정

- 유형자산 중 공급설비의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을 제외한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각상각비는 세법상 신고된 기준 내용연수(20년)의 정액법으로 산정함. 공급설비를 제외한 기타 유형자산은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는 직전년도 무형자산의 취득가액과 당해연도 취득예상액에 대하여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내용연수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비를 산정함
- 유·무형자산의 당기 취득예상액은 당기 중 가중 평균기준 증감한 것으로 가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함

라. 기타의 영업비용

-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추정액을 비교하여 증감률을 검토하여 산정함
-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항목별로 당해 연도에 추정된 기타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증가하는 경우 세부항목별로 증가이유를 확인하여,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조정함.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을 한도로 조정함

- 다만, 접대비와 같이 관련법령(법인세법 등)에서 법정 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초과액은 제외함. 대손상각비 또한 법인세법 상 대손금으로 인정된 금액을 한도로 공급비용에 산입할 수 있으며, 당기 채권회수로 인한 환입액을 차감하여 최종산입함

마. 센터수수료 산정

-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고,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공급비용 산정 시 승인된 금액과 실제 센터에 지급한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년 공급비용 산정 시 해당 차이를 정산하도록 함

바. 영업비용 정산

- 인건비, 고객센터수수료, 공급설비 감가상각비 및 요금기저 등 공급설비와 관련하여 추정액과 실제 발생한 비용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정산해야 함. 금년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으로, 주택용 계량기 교체비용이 추가되었음

사.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 요금기저 항목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이자비용(이자수익),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관련 손실(이익)은 적정원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외의 영업외비용(영업외수익)은 전년도 실적금액을 반영함

아. 특별손익

- 특별손익은 지방정부가 승인하는 경우에 유희 제조설비 및 도시계획법, 도로법 등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급설비 등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한적인 손익을 의미함
- 2020년 회계기간 중 도시가스 요금 승인이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에 대한 특별손익 반영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손익은 검토의 대상이 아님

자.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추정된 요금기저와 투자보수율에 따른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을 산정하여 원가에 반영하며, 현행 법인세법상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함

4. 적정투자보수의 산정

가. 요금기저

-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 순가동설비자산액, 순무형자산액, 일정분의 건설중인 자산의 연평균가액과 일정분의 운전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음
- 요금기저에 포함되는 항목 중 도시가스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않는 유희자산이나 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적정원가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및 투자재원과 같이 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은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
 -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년도 결산서상 기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은 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에 당해 연도의 투자계획과 자산처분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함
 - 당해연도 공급설비 순증감액은 전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에 당기 투자계획금액을 가산하고 당기 처분자산순액과 당기중 감가상각비 추정액 및 당기 건설중인자산 평균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시설분담금과 투자재원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 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함
- 무형자산은 기초가액에 당기상각액 및 당기취득과 처분을 고려한 기말가액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함
- 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원재료비를 제외한 적정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순액 등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을 차감한 연간 금액의 12분의 2를 적용함

나. 적정투자보수율

- 적정투자보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보수율과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구성비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함
- 자기자본에 대한 세후보수율은 CAPM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월말잔액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나누어 구한 보수율에

법인세율을 반영하여 산정함

- 자기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의 합계에 배당누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최초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이전의 결손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제외함
- 타인자본은 직전년도 차입금 평균 월말잔액으로 하되, 직전년도 차입금은 당좌차월, 장·단기차입금 및 사채 등 이자부부채의 합계로 산정함

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 미공급지역에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급비용 승인시 요금기저에 최대 3%의 범위 내에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할 수 있음
 - 미공급지역은 경제성 미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함
- 사업자는 추가로 인정받은 투자보수와 별도의 사업자 재원을 추가하여 인정받은 투자보수의 50% 이상을 반영하여 미공급지역에 전액 투자해야 함
 -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와 관련된 투자비는 정산 대상임

5. 요금 산정

가. 공급비용의 단가

- 공급비용 단가는 총괄원가를 당해연도 추정 판매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열량(MJ)으로 나눌 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물량(m³)으로 나눌 때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판매열량 차이의 정산
 - 판매열량과 관련하여 추정 판매열량과 실제 판매열량과의 차이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열량 차이를 정산하도록 함

나. 요금의 책정

- 요금제도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현행 적용하고 있는 요금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책정함
- 요금제도는 현행기준에 따라 주택용에서 사용하는 용도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 2부제 요금체계임

- 사용량 구간과 무관한 정액요금제를 부과하고 있음
- 기본요금은 수요자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되 기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는 있음
- 사용량요금은 총괄원가에서 기본요금으로 회수되는 금액을 차감한 공급비용을 판매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함

III. 2020년 공급비용 산정

1. 2019년 실적 및 2020년 회사제시

- 회사가 제시한 2020년 총괄원가는 103,426백만원으로, 2019년 승인금액인 99,495백만원보다 3,931백만원(+4%) 많은 금액임
- 전년 승인금액 대비 인건비가 2,881백만원, 기타경비가 3,306백만원 늘었으며, 투자보수율 하락으로 인해 투자보수가 1,261백만원 감소하였음

<표 1> 2019 승인 대비 2020 회사 제시

(단위: 천원)

구 분	2019 승인 (A)	2020 회사제시 (C)	승인대비 증감 (D=C-A)	증감률 (E=D/A)
적정원가	88,781,625	93,973,591	+5,191,966	5.8%
투자보수	10,713,525	9,452,451	▼1,261,074	-11.8%
총괄원가	99,495,151	103,426,042	+3,930,891	4.0%
추정판매물량	1,541,764	1,387,517	▼154,247	-10.0%
물량당 총괄원가	64.53	74.54	+10.01	15.5%
사회적배려대상자경감액	3,051,812	3,264,638	+212,826	7.0%
정산분	(3,436,542)	(1,133,485)	+2,303,056	-67.0%
인정공급비용	99,110,421	105,557,194	+6,446,774	6.5%
물량당 인정공급비용	64.28	76.08	+11.79	18.3%

2. 2020년 공급비용 조정

가. 공급비용 조정 결과

- 회사가 제시한 총괄원가는 103,426백만원, 추정판매물량은 1,387,517천m³으로, 물량당 총괄원가는 74.54원/m³임
- 조정 후 총괄원가는 99,049백만원으로 4,376백만원(▼4.2%)가 감소하였으며, 추정물량은 1,446,799천m³¹⁾으로 4.3% 증가하였음

1) 1~4월 실적 및 5~12월 3개년 평균의 합계

〈표 2〉 2020 회사제시 대비 조정

(단위: 천원)

구 분	2019	2020		
	승인	회사제시	조정	조정 후
적정원가	88,781,625	93,973,591	(4,278,729)	89,694,862
영업비용	86,453,951	92,505,443	(4,256,813)	88,248,631
인건비	26,703,552	29,584,615	(1,762,309)	27,822,306
인건비성 경비	5,396,305	5,938,547	(615,699)	5,322,847
감가상각비	14,798,750	14,663,114	(161,377)	14,501,736
센터수수료	20,477,757	21,143,033	(170,137)	20,972,895
지급수수료	6,059,838	7,093,673	(121,695)	6,971,978
기타	13,017,749	14,082,462	(1,425,594)	12,656,868
영업외비용및수익	(641,803)	(1,139,428)	-	(1,139,428)
법인세비용	2,969,477	2,607,576	(21,916)	2,585,660
투자보수	10,713,525	9,452,451	(97,888)	9,354,774
요금기저	161,764,406	165,397,872	(1,712,826)	163,685,047
운전자금	11,897,686	12,854,250	(1,052,752)	11,801,498
유형자산	147,382,305	149,611,270	(129,525)	149,481,744
무형자산	2,258,471	2,681,192	(530,548)	2,150,644
보증금	225,945	251,160	-	251,160
투자보수율	6.62%	5.71%	-	5.72%
총괄원가	99,495,151	103,426,042	(4,376,405)	99,049,637
추정판매물량	1,541,764	1,387,517	59,283	1,446,799
물량당 총괄원가	64.53	74.54	(6.08)	68.46
사회적매려대상자요금경감액	3,051,812	3,264,638	-	3,264,638
정산분	(3,436,542)	(2,189,828)	-	(2,189,828)
판매량정산 ²⁾	(2,288,781)	(1,913,330)	-	(1,913,330)
투자비정산	(1,063,718)	(32,568)	-	(32,568)
기타	(84,043)	(243,930)	-	(243,930)
인정공급비용	99,110,421	104,500,852	(4,376,405)	100,124,447
물량당 인정공급비용	64.28	75.32	(6.11)	69.20

나. 공급비용 조정 세부내용

1) 영업비용

(1) 인건비

2) 2019년 이월분(-)2,441백만원과 2020년 정산총액(+1,584백만원)의 합계는 857백만원이나, 2020년 정산총액을 3년 이연반영하는 경우, 1,584백만원 중 528백만원만 금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정산금액은 (-)1,913백만원임

- 인건비는 공급비용 중 약 30%를 차지하는 항목으로서, 도시가스 공급량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는 고정비적인 성격이 강함. 인건비는 크게 임원인건비와 직원인건비, 퇴직급여로 나뉨
- 회사 제시분은 29,584백만원이며, 1,762백만원(▼6%)의 조정을 통해 27,822백만원을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하였음

<표 3> 인건비 조정

(단위: 천원)

구 분	2019 인정	변동액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임원급여	2,354,160	771,835	3,125,995	(1,047,984)	2,078,010
급료	12,703,051	351,796	13,054,847	(131,941)	12,922,906
상여금	5,633,768	1,205,529	6,839,297	(386,017)	6,453,280
제수당	3,698,776	236,475	3,935,251	(24,084)	3,911,167
퇴직급여	2,313,797	315,428	2,629,225	(172,283)	2,456,942
소계	26,703,552	2,881,063	29,584,615	(1,762,309)	27,822,306

(가) 급·상여 및 수당

- 임원인건비 중 회장 직함의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전액 제외하였음
- 또한, 임직원인건비의 연간인상률 한도를 전년과 동일하게 2%로 설정, 초과금액을 조정하였음

※ 비교지표

- 공공기관 예산편성: 2.8%, 공무원 평균 임금인상률: 2.8%

<표 4> 회사별 급·상여 및 수당 조정

[인천도시가스(주)]

(단위: 천원)

구 분	2019 실적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조정률
임원	1,914,773	1,995,626	(858,679)	1,136,947	-43.0%
직원	14,168,811	14,897,807	(137,658)	14,760,150	-0.9%
계	16,083,584	16,893,433	(996,337)	15,897,096	-5.9%

[(주)삼천리]

(단위: 천원)

구 분	2019 실적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조정률
임원	1,200,006	1,130,369	(189,305)	941,064	-16.7%
직원	8,485,292	8,931,588	(404,385)	8,527,203	-4.5%
계	9,685,298	10,061,957	(593,690)	9,468,267	-5.9%

(나) 퇴직급여

- 상기 임직원급상여 및 수당 조정을 통해 퇴직급여 또한 조정하였음. 결산서 상의 급여와 퇴직급여 간의 비율은 1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표 5> 회사별 퇴직급여 조정

[인천도시가스(주)]

(단위: 천원)

구 분	2019 실적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조정률
임원	166,960	170,053	(73,171)	96,883	-43.0%
직원	1,222,888	1,269,486	(11,730)	1,257,756	-0.9%
계	1,389,847	1,439,539	(84,901)	1,354,638	-5.9%

[(주)삼천리]

(단위: 천원)

구 분	2019 실적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조정률
임원	177,096	152,769	(54,886)	97,883	-35.9%
직원	1,078,818	1,036,917	(32,496)	1,004,421	-3.1%
계	1,255,914	1,189,686	(87,382)	1,102,304	-7.3%

(2) 감가상각비

- 공급설비 및 인입배관 투자액은 인천시에 제출한 2개년 공급설비 투자계획 및 관련 부대비용, 배관보강 등 2개년 계획 외 투자, 인입관과 비교하였음
- 나머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최근 재수립된 투자계획 관련 내부 문서를 확인하여, 연중 취득이 확정된 업무용 자산에 대해서만 요금기저 및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였음

<표 6> 투자계획 및 감가상각비 조정

(단위: 천원)

구 분	투자계획			감가상각비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건물	111,384	(81,196)	30,187	356,687	(1,352)	355,335
건축물	-	-	-	33,095	-	33,095
기계장치	-	-	-	2,216	-	2,216
공급설비	14,613,820	-	14,613,820	11,592,223	-	11,592,223
인입배관	957,455	-	957,455	929,144	-	929,144
차량운반구	422,193	(140,193)	282,000	340,325	(18,038)	322,288

공구와기구	187,577	(11,061)	176,516	359,244	(1,383)	357,861
기타유형자산	71,100	(56,250)	14,850	73,124	(8,877)	64,247
소계	16,363,529	(288,700)	16,074,828	13,686,057	(29,649)	13,656,407
무형자산	1,548,660	(1,192,824)	355,836	977,057	(131,728)	845,329
계	17,912,189	(1,481,524)	16,430,665	14,663,114	(161,377)	14,501,736

(3) 기타경비

- 기타경비는 도시가스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선비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대비용과 판매부문과 관련이 있는 센터수수료 및 광고선전비, 그리고 회사운영 및 관리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³⁾,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등 다수의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 금년 상반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1~4월 원장 확인을 통해 회사제시분 대비 실적을 비교하였고, 하반기 중에도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조정하였음

(가) 복리후생비

- 조직활성화 목적의 그룹별 자선행사 및 관람행사나, 대규모 인원을 필요로 하는 체육대회 등은 일정이 취소되었거나 금년 내 집행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전액 조정하였음
- 국민연금 등 법정복리후생비와 사규에 의해 특정 대상자에게 금년 내 지급이 확실시 되는 시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전년실적 한도로 조정함

(나) 여비교통비

- 여비교통비 중 해외출장비는 1~5월 내 발생한 이력이 없으며, 하반기 내 집행될 가능성이 낮아, 전액 조정하였음
- 국내출장비는 1~4월 실적 확인 결과, 연간계획에 따라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정하지 않음

3)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교육훈련비

(다) 교육훈련비

- 1~4월 집행실적을 기초로, 연간환산하여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조정하였음

(라) 차량유지비

- 유류대는 최근의 가격 변동률을 고려하여 부분 조정하였으며, 수리비 외 기타 항목은 과거 실적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함

(마) 통신비

- 공급과 관련된 회선사용료는 1~4월 실적분을 월할계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수요자 대상 문자발송서비스료는 업체와 맺은 계약 및 최근의 서비스료발생분을 감안하였음. 나머지 기타항목은 전년실적 한도로 조정함

(바) 임차료

-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무관한 CNG 사업 등의 관련 비용은 제외함
- 공급과 관련되는 정압부지 임차료는 고지서 합산금액을 확인하여 제시분을 수용, 차량임차료 등 나머지 항목은 전년실적 한도로 조정하였음

(사) 수선비

- 전년실적 대비 초과금액에 대해 내부 품의서 등 결재문건을 비교대사하였으며,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실적 한도로 조정함
- 회사의 추정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과거 추이를 근거로 조정하였음

(아) 센터수수료

- 센터수수료는 전년 승인 대비 종사자에 대한 생활임금 인상률 적용 시 상승 폭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함
- 금년 생활임금 증가율 대비 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일부 조정하였음

〈표 7〉 회사별 센터수수료 조정

(단위: 천원)

구분	2018 실적	2019승인	인상률	2020제시	승인대비	조정	조정후
인천도사(주)	13,099,577	14,178,134	8.23%	14,773,616	4.20%	(170,137)	14,603,478
(주)삼천리	5,730,172	6,299,623	9.94%	6,369,417	1.11%	-	6,369,417
계	18,829,749	20,477,757	8.75%	21,143,033	3.25%	(170,137)	20,972,895

〈표 8〉 수도권 지역 종사자별 세대수(2019년 실적)

(단위: 세대/명)

구분	세대수(천세대)				직원현황(명)					공동주택비율	A	B
	주택(단독)	주택(공동)	기타	소계	검침점검원	민원기사	사무행정	총괄관리	소계			
서울시	1,750	2,611	326	4,687	1,031	380	240	69	1,720	56%	3,167	19,529
경기도	1,307	3,851	234	5,341	1,078	357	292	57	1,768	72%	3,581	18,270
인천시	291	945	58	1,295	249	146	58	13	466	73%	3,176	22,360

- 안전점검원 1인당 세대수(A)는 총 세대수를 사무행정을 제외한 검침점검원, 민원기사, 총괄관리자의 인원합계로 나눈 값을 말하며, 서울시가 1인당 3,167세대, 경기도가 3,581세대, 인천시가 3,176세대로, 세 지역이 모두 유사한 수준임
- 사무행정 1인당 세대수(B)는 총 세대수를 사무행정 인원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인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22,360세대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19,529세대, 경기도가 18,270세대 순으로 나타남

〈표 9〉 인천시 종사자별 세대수(2020년 추정)

(단위: 세대/명)

구분	세대수(천세대)				직원현황(명)					공동주택비율	A	B
	주택(단독)	주택(공동)	기타	소계	검침점검원	민원기사	사무행정	총괄관리	소계			
인천도시	191	603	40	835	166	117	30	10	322	72%	2,856	27,837
삼천리	103	353	19	475	100	28	21	3	152	74%	3,629	22,640
계	295	956	59	1,310	266	145	51	13	474	73%	3,095	25,697

- 회사가 제시한 2020년 추정 인원 대비 담당세대수를 살펴보면, 검침점검원 추가 고용을 통해 안전점검원 1인당 세대수(A)가 2019년 실적 3,176세대 대비 2020년 3,095세대로, 1인당 담당세대가 약 81세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사무행정 1인당 세대수(B)의 경우, 2019년 22,360세대에서 25,697세대로 급격히 늘어, 수도권 내 타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편임. 인당 세대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임

(자) 지급수수료

- 전년실적 대비 신규로 발생하는 건이나, 수수료가 인상된 건에 대해서는 내부문건을 비교대사하였으며, 증빙이 미비하거나 회사제시분 대비 금액이 축소된 건에 대해서는 차액을 모두 조정하였음
- 각 사의 스마트폰 앱 출시로 인해 예상되는 고지서 발행비 절감규모를 반영하였으며, 임원 대상 복리후생비 성격의 연간회비 등은 전액 조정하였음

<표 10> 회사별 지급수수료 조정

[인천도시가스(주)]

(단위: 천원)

구 분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조정률
직접배부	967,538	(4,000)	963,538	-0.4%
간접배부	2,105,174	(33,116)	2,072,058	-1.6%
계	3,072,713	(37,116)	3,035,597	-1.2%

[(주)삼천리]

(단위: 천원)

구 분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조정률
직접배부	2,592,644	-	2,592,644	-
간접배부	1,059,449	(52,813)	1,006,636	-5.0%
계	3,652,093	(52,813)	3,599,280	-1.4%

(자) 광고선전비

- 중복산입된 항목은 전액 조정하였으며, 규모가 큰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내부결재문건과 비교대사하여, 회사제시분과 금액이 다를 경우, 차액을 조정하였음

<표 11> 회사별 광고선전비 조정

(단위: 천원)

구 분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조정률
인천도시가스(주)	289,744	(44,393)	245,351	-15.3%
(주)삼천리	252,156	(11,826)	240,330	-4.7%
계	541,900	(56,219)	485,681	-10.4%

(차)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상계액 중 세무상 대손시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공급비용에 산입되어 왔음. 대손충당금 상계액은 기말 채권잔액 중 대손가능성에 따라 일정비율 적립된

계정인 대손충당금 중에 실제로 당기에 대손상황이 발생하여, 제각한 금액을 말함. 이러한 경우, 대손처리된 후에 회수하는 경우에 인식하는 수입(영업외수익 또는 대손상각비의 환입액)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함

- 양 사가 제시한 대손충당금 상계액에 대손상각비 환입액을 제한 금액을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함

(카) 세금과공과

- 재산세 및 사업소세 등 고지되는 금액은 증빙을 확인하여 수용, 각종회비 및 협회비는 일부 조정하였고, 나머지 항목은 전년 실적한도로 조정하였음
- 인천지역으로 배부 오류가 발생한 항목은 조정하였음

(타) 연구개발비

- 금년 내 기간만료 예정인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비 총액 중 잔액을 전액 공급비용에 산입하고, 차기 또는 차차기 기간만료인 과제에 대해서는 과거 추이를 고려하여 회사제시분을 조정함

다. 공급비용 조정결과

<표 12> 영업비용 계정별 조정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2019 승인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임원급여	2,354,160	3,125,995	(1,047,984)	2,078,010
급료	12,703,051	13,054,847	(131,941)	12,922,906
상여금	5,633,768	6,839,297	(386,017)	6,453,280
제수당	3,698,776	3,935,251	(24,084)	3,911,167
퇴직급여	2,313,797	2,629,225	(172,283)	2,456,942
잡급	-	-	-	-
인건비 계	26,703,552	29,584,615	(1,762,309)	27,822,306
감가상각비	14,076,074	13,686,057	(29,649)	13,656,407
무형자산상각비	722,676	977,057	(131,728)	845,329
감가상각비 계	14,798,750	14,663,114	(161,377)	14,501,736
복리후생비	4,829,067	5,148,010	(343,317)	4,804,693
여비교통비	117,630	177,067	(16,389)	160,678
차량유지비	348,007	318,024	(24,297)	293,726
통신비	458,059	543,411	(42,774)	500,637

구분	2019 승인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수도광열비	218,904	214,789	(2,768)	212,021
소모품비	400,100	413,041	(42,836)	370,205
세금과공과	1,475,233	1,915,210	(650,000)	1,265,210
임차료	1,911,213	4,023,660	(191,537)	3,832,124
리스료	-	-	-	-
관로수선비	816,900	-	-	-
수선비	843,080	1,959,617	(342,104)	1,617,513
보험료	376,463	363,966	(10,107)	353,859
접대비	170,097	169,727	-	169,727
회의비	26,889	25,521	-	25,521
광고선전비	353,323	541,899	(56,219)	485,680
경상개발비	38,264	68,958	(18,362)	50,596
교육훈련비	101,601	295,445	(231,695)	63,750
도서인쇄비	84,257	88,533	(2,044)	86,489
지급수수료	6,059,838	7,093,673	(121,695)	6,971,978
센터수수료	20,477,757	21,143,033	(170,137)	20,972,895
도로점용료	1,633,485	-	-	-
대손상각비	660,552	528,559	(47,593)	480,966
사옥관리비	232,449	236,712	(12,090)	224,622
운반비	-	-	-	-
안전점검비	416,209	-	-	-
계량기교체비	2,851,615	2,919,037	-	2,919,037
잡비	50,657	69,821	(7,161)	62,660
기타경비 계	44,951,649	48,257,715	(2,333,126)	45,924,589
영업비용 합계	86,453,951	92,505,443	(4,256,813)	88,248,631

2) 영업외비용및수익, 법인세비용

(1) 영업외비용 및 수익

- 계정별로 전년 실적을 거치하고, 직전년도 매출액 비율로 배부되도록 함

(2) 투자보수

-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영업비용 중 현금지출이 없는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대손상각비 순액을 차감한 연간금액을 2개월분으로 월할계산한 금액을 운전자금으로 반영함
- 현 시점에서 집행가능성을 건별로 확인하여, 유·무형자산의 신규투자금액 조정을 실시하였음

〈표 13〉 요금기저 조정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제시	조정	조정후	조정률
요금기저	165,398	(1,713)	163,685	-1.0%
운전자금	12,854	(1,053)	11,801	-8.2%
유형자산	149,611	(130)	149,482	-0.1%
무형자산	2,681	(531)	2,151	-19.8%
보증금	251	-	251	-

(3) 법인세비용

- 요금기저의 조정으로 인해 법인세비용이 회사제시분 대비 감소하였음

〈표 14〉 법인세비용 조정

(단위: 천원)

구 분	회사제시	조정	조정후
인천도시가스(주)	1,720,113	(14,546)	1,705,567
(주)삼천리	887,463	(8,098)	879,365
계	2,607,576	(22,644)	2,584,932

3) 정산분 및 요금경감액

(1)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 경감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일반도시가스회사가 지원한 금액을 금년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하여, 요금을 통해 회수될 수 있도록 함

〈표 15〉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 경감액

(단위: 천원, 원/m³)

구 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합계
경감 총액	2,115,162	1,149,476	3,264,639
경감 단가	+2.59	+1.83	+2.26

(2) 투자비 정산

- 2019년 공급비용 산정 시, 추정 공급설비 및 인입배관 투자비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투자보수에 대해 오차가 발생함. 금년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될 금액은 (-)0.02원/m³임

〈표 16〉 투자비 정산

(단위: 천원, 원/m³)

구 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합계
투자비 정산액	(82,876)	50,308	(32,568)
정산 단가	▼0.10	+0.08	▼0.02

(3) 사회적배려대상자 실적 정산

- 2019년 공급비용에 반영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금과 2019년 실제 발생금액 간의 차액을 금년 공급비용에 반영함

〈표 17〉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금 정산 (단위: 천원, 원/m³)

구 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합계
인정	1,979,069	1,071,016	3,050,085
실적	1,971,654	1,072,743	3,044,397
오차	(7,415)	1,727	(5,689)
정산 단가	▼0.01	+0.003	▼0.004

(4) 계량기 교체비 정산

- 계량기 교체비가 실적 대비 높게 추정되어, 차액에 해당하는 (-)0.20원/m³을 금년 공급비용 산정에 반영함

〈표 18〉 계량기 교체비 정산 (단위: 천원, 원/m³)

구 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합계
인정	1,757,869	1,093,746	2,851,615
실적	1,652,057	915,655	2,567,712
오차	(105,812)	(178,091)	(283,903)
정산 단가	▼0.13	▼0.28	▼0.20

(5) 판매량 정산

- 2019년 공급비용 산정 시 적용된 추정판매물량 대비 실적판매물량이 더 적어, 차액만큼 금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공급비용 산정기준』에서 말하는 현저한 차이에 해당되어, 최대 3년 내의 기간 내에서 이연하여 반영할 수 있음
- 2019년 판매물량 차이로 인해 발생한 정산총액은 1,584백만원이며, 이를 금년 공급비용에 전액 반영하는 경우와, 3년 분할로 반영하는 경우, 전액을 모두 이월하는 경우가 있음
- 금년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인정공급비용은 상승하여, 단위당 인정공급비용은 증가됨
- 한편, 2018년 물량 과소예측으로 인해 발생한 전년도 판매량 정산분을 해당 시점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절반을 차기(2020년)으로 이월하였으며, 금년 공급비용에 반영해야 할 금액은 (-)2,441백만원임. 해당 금액은 전년도 잔액에 전년도 투자보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서, 금년의 인정공급비용 하락에 영향을 미침

〈표 19〉 판매량 정산

구 분		단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합계
2018년분		천원	(2,076,608)	(364,893)	(2,441,501)
정산단가		원/m ³	▼2.54	▼0.58	▼1.69
2019년분	추정판매열량	천MJ	37,637,623	28,074,864	65,712,487
	실적판매열량	천MJ	36,908,350	27,374,301	64,282,651
	오차판매열량	천MJ	(729,273)	(700,563)	(1,429,836)
	추정회수금액(A)	천원	52,180,063	35,487,763	87,667,826
	실적회수금액(B)	천원	51,452,042	34,631,271	86,083,313
	오차회수금액[(A)/(B)-1]	천원	728,021	856,492	1,584,513
	2020 추정판매량	천m ³	816,966	629,834	1,446,799
	정산 단가				
	1안) 전액 반영	원/m ³	+0.89	+1.36	+1.10
	2안) 이월 반영	원/m ³	0.30	0.45	+0.37
	3안) 전액 이월	원/m ³	-	-	-

(6) 미인상분 환원

- 2019년 공급비용 산정 시 미반영된 인상분에 대해 금년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할 금액은 52백만원으로, 단위당 0.04원/m³임

〈표 20〉 미인상분 환원

(단위: 천원, 원/m³)

구 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합계
미인상분 정산금액	30,856	20,919	51,774
정산 단가	+0.04	+0.03	+0.04

(7) 전년도 오류 조정

-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발생한 투자비 오류로 인해, 조정되어야 할 금액은 6백만원으로, 금년 공급비용 산정 시 (-)0.004원/m³을 반영해야 함

〈표 21〉 전년도 오류 조정

(단위: 천원, 원/m³)

구 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합계
오류금액	-	(6,113)	(6,113)
정산 단가	-	▼0.01	▼0.004

IV. 최종 용도별 소비자가격 산정

1. 기본요금

- 기본요금은 수요가당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교체비 등을 기초로 산정하되, 기본요금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 기본요금 관련 비용의 추정 결과, 2020년 기본요금 관련 비용은 약 1,277.31원/월·세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9년도 실적 기본요금 관련비용인 1,252.48원/월·세대에 비해 약 25원/월·세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고지서 발행비가 일부 절감되었고, 투자보수율 축소로 인한 인입관 비용이 감소하였으나, 센터수수료 및 계량기 교체건수 증가로 인해, 최종 세대당 기본요금은 증가하였음

〈표 22〉 기본요금 전년 실적 대비 증감

(단위: 원/월·세대)

구 분	2020 승인		계	2019 실적	증감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검침비	302.71	160.27	251.49	250.92	+0.58
송달비	82.01	46.39	69.20	66.05	+3.15
고지서발행비	14.99	19.56	16.63	16.92	▼0.29
지로수수료	91.65	82.97	88.53	86.92	+1.61
안전점검비	477.01	325.37	422.48	425.63	▼3.14
계량기교체비	257.70	358.55	293.96	267.29	+26.67
인입관비용	102.94	192.14	135.01	138.77	▼3.75
계	1,329.00	1,185.24	1,277.31	1,252.48	+24.83

2. 추정판매물량

- 전년도 4분기부터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국면을 맞이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가하락으로 인한 산업체의 도시가스 사용 급감이 금번 공급비용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산업용 물량이 전체 물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인천지역의 경우, 대량수요자 중심으로 수요물량 감소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음. 도시가스 회사의 경직적인 공급비용 발생구조에 반해, 전 용도에서의 물량 하락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산업용 물량 중 상위 10개 고객사에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개별 상향조정을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그 외 고객사에 대한 조치도 실시하였음. 이를 통해 판매량 급감으로 인한 단위당 인정공급비용의 인상요인을 일부 상쇄하였음

가. 회사 제시

1) 1~4월 실적

- 금년 1~4월 용도별 판매실적은 전년 동기간 대비 86,272천m³(12%)가 감소하였는데, 이 중 산업용 물량의 영향이 가장 큼(총 감소액 중 54% 차지)

〈표 23〉 회사별 1~4월 실적 판매량

(단위: 천m³)

구 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합계 (A)	전년동기간 (B)	차이 (C)=(A)-(B)	
주택취사	30,488	14,409	44,897	45,032	(135)	
주택난방	212,243	110,422	322,665	342,571	(19,906)	
업무난방	10,906	6,557	17,463	22,196	(4,733)	
영업1	24,616	15,528	40,144	42,892	(2,748)	
영업2	6,799	2,679	9,479	11,894	(2,415)	
냉난방공조용	6,594	3,519	10,113	11,774	(1,661)	
산업용	66,916	101,135	168,051	214,840	(46,789)	
연료전지용	11	40	51	54	(3)	
열병합 1	열병합	530	740	1,271	1,023	248
	열전용	697	1,979	2,675	2,947	(272)
열병합 2	열병합	-	1,436	1,436	4,984	(3,548)
	열전용	-	126	126	848	(721)
수송용	18,072	10,460	28,533	31,604	(3,071)	
사회복지	2,447	1,220	3,667	4,184	(518)	
합계	380,320	270,250	650,570	736,842	(86,272)	

2) 5~12월 추정

- 한편, 회사가 추정한 5~12월 용도별 판매량은 전년 동기간 실적 대비 주택난방이 2% 낮고, 산업용이 9% 낮음
- 1~4월의 실적 추이를 벗어나지 않으나, 감소폭이 적정한 수준인지 확인하여, 금번 공급비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

〈표 24〉 회사별 5~12월 추정 판매량

(단위: 천m³)

구 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합계 (A)	전년동기간 (B)	차이 (C)=(A)-(B)	
주택취사	51,513	24,779	76,292	76,102	190	
주택난방	108,156	52,717	160,873	163,992	(3,118)	
업무난방	7,533	5,151	12,684	12,335	350	
영업1	41,227	29,607	70,834	66,664	4,170	
영업2	10,530	3,245	13,775	14,479	(704)	
냉난방공조용	11,778	8,073	19,851	19,903	(52)	
산업용	123,534	190,080	313,614	345,023	(31,409)	
연료전지용	9	41	50	43	7	
열병합 1	열병합	638	1,169	1,807	1,674	133
	열전용	417	1,046	1,462	1,592	(130)
열병합 2	열병합	-	104	104	721	(617)
	열전용	-	45	45	92	(47)
수송용	37,638	25,173	62,811	63,740	(929)	
사회복지	1,864	879	2,744	2,893	(150)	
합계	394,837	342,109	736,947	769,253	(32,306)	

나. 조정 내역

- 용도별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용 물량과 주택용 물량에 대해 조정하였음

1) 산업용 물량 조정

[인천도시가스(주)]

- 인천도시가스(주)의 단일수요자 중 물량이 가장 큰 고객은 SK인천석유화학(이하 SK)로, 금년 초 인천도시가스(주)에 발송한 월별 계획수요량 및 3월말에 송부한 4~6월 계획수요량과 인천도시가스(주)가 추정한 월별수요량을 비교대사하였음. SK는 연초

수립한 계획물량의 50% 수준의 1~4월 실적물량을 소비하고 있었으며, 4월 또한 3월말에 재수립한 계획수요량의 36% 미달한 물량을 실제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추세를 감안할 때, 인천도시가스(주)가 설정한 5~12월 예상수요량에서 추가적인 상향조정은 어려워 보임
- 상위 10개사 중 SK 외 9개사의 경우, 2018년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감소 경향은 이어지고 있으나, 절대수요량으로 보면 60백만m³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5~12월은 동기간 3개년 평균값을 적용함

〈표 25〉 인천도시가스(주) 산업용 판매량 조정 (단위: 천m³)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회사제시	2020 조정안
산업용	208,205	220,573	211,752	280,661	256,659	190,450	201,220
상위10개사	139,486	148,946	140,793	208,399	184,942	110,846	121,616
SK	46,690	50,873	44,734	104,912	85,912	27,431	27,431
SK 외	92,796	98,073	96,059	103,488	99,030	83,415	94,184
그 외	68,719	71,627	70,958	72,261	71,717	79,604	79,604
전년대비	-	-4%	33%	-9%	-26%	-22%	-1.2%

[(주)삼천리]

- (주)삼천리의 최대수요자는 현대제철이며, 1~4월 실적 및 최근 5개년 수요추세를 보아, 5~12월 예상수요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임
- 현대제철 외 9개사의 5~12월 추정치는 과거 추세대비 과소추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동기간 3개년 평균값으로 상향조정함. 또한, 10개사 외 산업용 물량에 대해서는 급락이 심한 3개년 평균값 대신 전년 동기간 판매량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였음

〈표 26〉 (주)삼천리 산업용 판매량 조정 (단위: 천m³)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회사제시	2020 조정안
산업용	330,409	344,465	341,488	312,963	303,203	291,215	299,466
상위10개사	206,297	213,948	215,145	223,378	221,351	210,278	217,615
현대제철	91,942	91,114	89,535	93,580	94,311	94,311	94,311
현대제철 외	114,355	122,833	125,610	129,798	127,040	115,967	123,304
그 외	124,112	130,517	126,343	89,585	81,852	80,937	81,852
전년대비	-	4%	-1%	-8%	-3%	-4.0%	-1.2%

2) 주택용 물량 조정

[인천도시가스(주)]

- 주택취사용은 과거 추세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었으나, 주택난방용은 전년도를 제외하고는 감소추세로 보기 어려워, 동기간 3개년 평균으로 상향조정함

<표 27> 인천도시가스(주) 주택용 판매량 조정 (단위: 천m³)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회사제시	2020 조정안
주택용	364,611	382,257	406,957	438,419	414,486	402,401	408,621
주택취사	75,384	77,273	79,314	80,324	81,179	82,001	82,001
주택난방	289,227	304,984	327,643	358,095	333,307	320,400	326,620
전년대비	-	5%	6%	8%	-5%	-2.9%	-1.4%
주택취사	-	3%	3%	1%	1%	1.0%	1.0%
주택난방	-	5%	7%	9%	-7%	-3.9%	-2.0%

[(주)삼천리]

- 과거 5개년 추세를 고려하여, 주택취사 및 난방용의 5~12월 추정치를 동기간 3개년 평균값으로 상향조정하였음

<표 28> (주)삼천리 주택용 판매량 조정 (단위: 천m³)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회사제시	2020 조정안
주택용	191,109	196,083	209,302	228,277	213,210	202,327	207,592
주택취사	39,503	40,203	41,795	41,744	39,955	39,188	40,260
주택난방	151,606	155,880	167,507	186,533	173,255	163,139	167,332
전년대비	-	3%	7%	9%	-7%	-5.1%	-2.6%
주택취사	-	2%	4%	0%	-4%	-1.9%	0.8%
주택난방	-	3%	7%	11%	-7%	-5.8%	-3.4%

다. 조정 결과

- 주택용 및 산업용의 개별상향조정 후 용도별 판매량 합계액 중 5~12월 판매량을 3개년 평균값으로 정률인상하였을 때는 1,446,799천m³, 2개년 평균값으로 정률인상하였을 때는 1,453,367천m³으로 나타남

[인천도시가스(주)]

- 주택용 및 산업용의 개별상향조정 후 용도별 판매량 합계액을 3개년 평균값으로 정률인상하였을 때는 816,966천m³, 2개년 평균값으로 정률인상하였을 때는 827,491천m³으로 나타남. 단, 2018년은 추세 대비 일시적인 판매증가가 발생한 해이므로, 2개년 평균보다는 3개년 평균이 추세를 보다 적정한 기준값이 될 수 있음

<표 29> 인천도시가스(주) 용도별 연간 추정 판매량 (단위: 천m³)

구 분	회사 제시	개별조정		3년 평균(정률)		
			조정 후		조정 후	
주택취사	82,001	-	82,001	+2,569	84,571	
주택난방	320,400	+6,220	326,620	+10,233	336,853	
업무난방	18,439	-	18,439	+578	19,017	
영업1	65,842	-	65,842	+2,063	67,905	
영업2	17,329	-	17,329	+543	17,872	
냉난방공조용	18,372	-	18,372	+576	18,948	
산업용	190,450	+10,769	201,220	+6,305	207,524	
연료전지용	20	-	20	+1	21	
열병합1	열병합	1,168	-	1,168	+37	1,205
	열전용	1,113	-	1,113	+35	1,148
열병합2	열병합	-	-	-	-	-
	열전용	-	-	-	-	-
수송용	55,711	-	55,711	+1,745	57,456	
사회복지	4,311	-	4,311	+135	4,446	
합계	775,157	+16,989	792,147	+24,819	816,966	

[(주)삼천리]

- 주택용 및 산업용의 개별상향조정 후 용도별 판매량 합계액을 3개년 평균값으로 정률인상하였을 때는 629,834천m³, 2개년 평균값으로 정률인상하였을 때는 625,876천m³으로 나타남. 산업용 및 주택용 개별상향조정 후 용도별 평균값이 2개년 평균값을 상회하므로, (주)삼천리 또한 3개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률 조정함

<표 30> (주)삼천리 용도별 연간 추정 판매량 (단위: 천m³)

구 분	회사 제시	개별조정		3년 평균(정률)	
			조정 후		조정 후
주택취사	39,188	+1,072	40,260	+255	40,515
주택난방	163,139	+4,193	167,332	+1,058	168,390
업무난방	11,708	-	11,708	+74	11,782

영업1	45,135	-	45,135	+285	45,421	
영업2	5,925	-	5,925	+37	5,962	
냉난방공조용	11,592	-	11,592	+73	11,665	
산업용	291,215	+8,252	299,466	+1,893	301,360	
연료전지용	81	-	81	+1	81	
열병합1	열병합	1,909	-	1,909	+12	1,922
	열전용	3,024	-	3,024	+19	3,044
열병합2	열병합	1,540	-	1,540	+10	1,549
	열전용	171	-	171	+1	172
수송용	35,633	-	35,633	+225	35,858	
사회복지	2,099	-	2,099	+13	2,112	
합계	612,359	+13,517	625,876	+3,957	629,834	

[인천시 합계]

- 5~12월 주택용 및 산업용 물량 상향조정 후 용도별 합계를 최근 3개년 평균값으로 상향조정(정률법 적용)하는 경우, 회사제시분 1,387,517천m³에서 1,446,799천m³로 상승함(4.3%)
- 2개년 평균값으로 적용하는 경우, 회사제시분 대비 4.7%가 상승함

<표 31> 인천시 용도별 연간 추정 판매량 (단위: 천m³)

구 분	회사 제시	개별조정		3년 평균(정률)		
			조정 후		조정 후	
주택취사	121,189	+1,072	122,262	+2,824	125,085	
주택난방	483,539	+10,413	493,952	+11,291	505,243	
업무난방	30,147	-	30,147	+652	30,799	
영업1	110,978	-	110,978	+2,348	113,326	
영업2	23,253	-	23,253	+580	23,834	
냉난방공조용	29,964	-	29,964	+649	30,613	
산업용	481,665	+19,021	500,686	+8,198	508,884	
연료전지용	101	-	101	+1	102	
열병합1	열병합	3,078	-	3,078	+49	3,127
	열전용	4,138	-	4,138	+54	4,192
열병합2	열병합	1,540	-	1,540	+10	1,549
	열전용	171	-	171	+1	172
수송용	91,344	-	91,344	+1,971	93,314	
사회복지	6,410	-	6,410	+148	6,558	
합계	1,387,517	+30,506	1,418,023	+28,776	1,446,799	

3. 평균 사용량 공급비용 결과

- 금년 추정판매물량을 5~12월에 대해 3개년 평균값으로 적용하고, 물량정산금액을 3년 균등 이연 반영하는 경우 61.27원/m³, 전액 이연하는 경우 60.91원/m³으로 나타남

<표 32> 판매량 변동에 따른 사용량 공급비용 증감 (단위: 원/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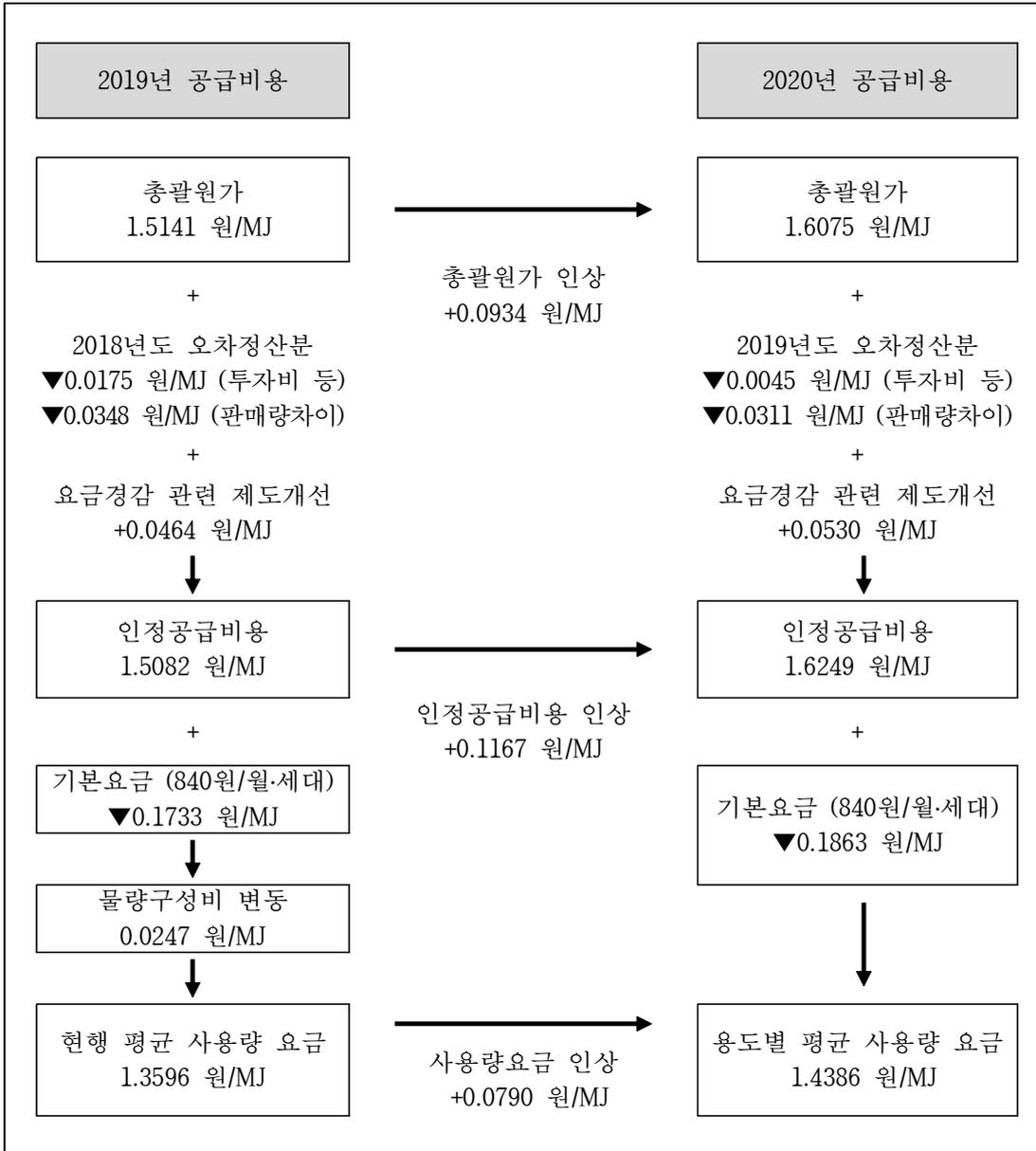
구 분	2019 평균	2020 조정 후			증감액		
		1안) 전액반영	2안) 3년이연	3안) 전액이연	1안) 전액반영	2안) 3년이연	3안) 전액이연
3개년 평균 적용	57.90	62.00	61.27	60.91	+4.10	+3.37	+3.01

- 2안 적용 시 용도별 사용량요금은 61.27원/m³으로 현행 57.90원/m³ 대비 3.37원/m³ 증가하며, 열량기준으로는 0.0790원/MJ 증가함

<표 33> 용도별 소매마진 (단위: 원/MJ, 원/m³)

구 분	열량기준			부피기준			
	현행	조정 후 (2안)	증감	현행	조정 후 (2안)	증감	
주택취사	1.5094	1.5972	+0.0878	64.28	68.02	+3.74	
주택난방	1.5465	1.6364	+0.0899	65.86	69.69	+3.83	
업무난방	1.7864	1.8903	+0.1039	76.08	80.51	+4.42	
영업1	2.9581	3.1301	+0.1720	125.98	133.31	+7.32	
영업2	1.7864	1.8903	+0.1039	76.08	80.51	+4.42	
냉난방공조용	1.4875	1.5740	+0.0865	63.35	67.03	+3.68	
산업용	0.8732	0.9240	+0.0508	37.19	39.35	+2.16	
연료전지용	0.6027	0.6377	+0.0350	25.67	27.16	+1.49	
열병합1	열병합	1.1045	1.1687	+0.0642	47.04	49.77	+2.73
	열전용	1.5465	1.6364	+0.0899	65.86	69.69	+3.83
열병합2	열병합	1.2563	1.3293	+0.0730	53.51	56.62	+3.11
	열전용	1.2563	1.3293	+0.0730	53.51	56.62	+3.11
수송용	0.6027	0.6377	+0.0350	25.67	27.16	+1.49	
사회복지	0.8732	0.9240	+0.0508	37.19	39.35	+2.16	
합계	1.3596	1.4386	+0.0790	57.90	61.27	+3.37	

<표 34> 2020년 평균 사용량요금 조정 (열량기준)



- 전년도 대비 총괄원가는 0.0934원/MJ 인상되며, 정산분 및 요금경감액까지 고려하면 0.1167원/MJ이 높은 수치임. 기본요금 및 물량구성비 변동을 감안하면, 용도별 평균사용량 요금은 전년도 1.3596원/MJ에서 0.0790원/MJ 높은 1.4386원/MJ으로 산출됨
- 2020년 도시가스 발열량(42.5895MJ/m³, 10,172kcal/m³)은 2019년 적용 발열량(42.6216 MJ/m³, 10,180kcal/m³) 대비 0.08% 감소한 수치임

V. 수지격차 완화 방안

1. 수지격차 발생 특징

- 인천시는 두 개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며, 양 사의 인정공급비용 평균값을 평균소매마진으로 결정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한 회사의 공급비용 미회수와 다른 한 회사의 초과회수가 발생하고 있음
- 수지격차는 단위당 인정공급비용이 상이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용도별 판매물량 구성이 상이함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함. 즉, 용도별 소매마진은 양 사의 용도별 물량을 합산한 값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는데, 소매마진이 낮은 용도에 대한 판매물량이 높은 회사일수록 평균소매마진이 낮아, 반대 상황에 놓인 회사의 높은 평균소매마진으로 인해 차익을 실현하게 됨
- 앞서 살펴본 2020 공급비용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인천도시가스(주)와 (주)삼천리의 단위당 총괄원가 및 인정공급비용을 살펴보면, 인천도시가스(주)가 (주)삼천리보다 단위당 공급비용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5> 회사별 인정공급비용과 회수금액 간 차이 (단위: 백만원, 원/m³)

구 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합계
총괄원가	61,225	37,824	99,050
정산분 등	879	196	1,075
인정공급비용(A)	62,104	38,021	100,124
단위당 인정공급비용(B)	76.02	60.37	69.20
회수금액(C)	59,905	40,220	100,124
기본요금	7,350	4,127	11,477
사용량요금	52,555	36,093	88,647
단위당 회수금액(D)	73.32	63.86	69.21
수지격차(E)	(2,199)	2,199	-

- 또한, 인천도시가스(주)와 (주)삼천리의 용도별 물량 구성을 비교해 보면, 주택난방용이 각각 41% 및 27%, 산업용 물량이 25% 및 48%로, 소매마진이 가장 낮은 산업용의 물량비중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표 36〉 용도별 소매마진 및 회사별 추정판매물량 구성 (단위: 원/m³)

구 분	소매마진		추정판매물량 비중	
	현행	조정시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주택취사	64.28	68.02	10.4%	6.4%
주택난방	65.86	69.69	41.2%	26.7%
업무용	76.08	80.51	2.3%	1.9%
영업1	125.98	133.31	8.3%	7.2%
영업2	76.08	80.51	2.2%	0.9%
냉난방공조용	63.35	67.03	2.3%	1.9%
산업용	37.19	39.35	25.4%	47.8%
연료전지용	25.67	27.16	0.003%	0.01%
열병합용1	47.04	49.77	0.1%	0.3%
공동주택열전용	65.86	69.69	0.1%	0.5%
열병합용2	53.51	56.62	-	0.2%
집단에너지열전용	53.51	56.62	-	0.03%
수송용	25.67	27.16	7.0%	5.7%
사회복지시설	37.19	39.35	0.5%	0.3%
계	57.90	61.28	100.0%	100.0%

- 종합하면, 인천도시가스(주)의 단위당 공급비용이 (주)삼천리에 비해 높아서, 인천도시가스(주)의 미회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소매마진이 높은 용도의 판매비중을 높일수록 평균소매마진이 높아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격차를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단위당 인정공급비용 초과규모가 이를 상회하는 규모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지격차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수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가스(주)의 용도별 비중 특성을 이용하여, (주)삼천리보다 높은 판매구성의 주택난방용 사용량금액을 인상하고, (주)삼천리보다 낮은 판매구성인 산업용 사용량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 본 용역에서는, 기본요금을 포함한 용도별 요금을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했을 때 나타나는 수지격차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2. 요금 조정 방안

가. 수도권 요금 비교

- 인천시 외 서울시 및 경기도 또한 주택용에 대해 2부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주택용 요금 인상이력을 살펴보면, 월 기본요금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시가 2014년에 각각 60원 및 50원씩 인상하였음. 서울시는 2016년 1,000원으로 인상하였음
- 사용량요금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18년에 주택취사용 및 주택난방용 요금을 일부 인하하였으며, 서울시와 인천시는 동결하였음. 서울시는 기본요금이 높은만큼 사용량요금이 타 수도권역에 비해 낮은 편임

〈표 37〉 수도권 주택용 요금 변천

(단위: 원/월·세대, 원/MJ)

구분	기본요금			사용량요금					
				주택취사용			주택난방용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2011	840	790	750	0.9154	1.3488	1.2314	1.0406	1.3153	1.2617
2012	840	790	750	0.9154	1.3488	1.2314	1.0406	1.3153	1.2617
2013	840	790	790	0.9154	1.3874	1.2748	1.0406	1.3539	1.3062
2014	900	850	840	1.1148	1.4436	1.3147	1.1148	1.4101	1.3471
2015	900	850	840	1.1148	1.4968	1.4426	1.1148	1.4633	1.4781
2016	1,000	850	840	1.1435	1.5268	1.5094	1.1435	1.4933	1.5465
2017	1,000	850	840	1.2219	1.5534	1.5094	1.2219	1.5199	1.5465
2018	1,000	850	840	1.2219	1.5132	1.5094	1.2219	1.4797	1.5465
2019	1,000	850	840	1.2219	1.5132	1.5094	1.2219	1.4797	1.5465

- 한편, 주택용 요금에 대해 수도권 권역별로 회수총액 및 단위당 회수금액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1.6748원/MJ로 가장 낮고, 경기도가 1.9422원/MJ로 인천시 1.9588원/MJ와 유사한 수준임

〈표 38〉 수도권 주택용 요금 비교(현행기준)

구 분		기본요금 (원/월·세대)	사용량 요금 (원/MJ)	열량 (백만MJ)	누적 수요가수 (천세대)	회수총액 (백만원)	열량당 (원/MJ)	주택용 열량당 (원/MJ)
서울시	주택취사	1,000	1.2219	17,399	49,676	70,937	4.0770	1.6748
	주택난방	-	1.2219	92,275	-	112,751	1.2219	
경기도	주택취사	850	1.5132	19,586	56,364	77,547	3.9593	1.9422
	주택난방	-	1.4797	85,419	-	126,394	1.4797	
인천시	주택취사	840	1.5094	5,245	13,558	19,306	3.6807	1.9588
	주택난방	-	1.5465	21,903	-	33,873	1.5465	

- 주택용 외 산업용 사용량 요금을 비교하면, 서울시의 산업용 요금이 0.7868원/MJ로 가장 낮고, 경기도가 1.0587원/MJ으로 가장 높음

〈표 39〉 수도권 산업용 요금(현행기준) (단위: 원/MJ)

구 분	현행 ('19년 6월 또는 7월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주택취사용	1.2219	1.5132	1.5094
주택난방용	1.2219	1.4797	1.5465
산업용	0.7868	1.0587	0.8732

- 서울시와 경기도의 요금을 기준으로 인천시의 주택용 기본요금 인상 및 산업용 요금 인하를 실시하였을 때 수지격차 완화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함

나. 대안 수립

- 결론적으로, 산업용 요금 인하로 인한 영향을 어떤 용도에 대한 인상으로 상쇄시키느냐에 따라 수지격차 완화 수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음
- 산업용 요금의 인하 수준을 ①수도권 지역과 일치되는 기본요금의 인상규모로 설정하거나, ②서울시의 산업용 요금에 도달하도록 인하시키는 방안이 있음
- 현재 인천시의 기본요금 840원/월·세대를 경기도 수준인 850원/월·세대 또는 서울시 수준인 1,000원/월·세대로 인상되는만큼만 산업용 사용량요금을 인하하는 방법이 상기 ①번 항목에 해당됨. 이는 아래에서 설명한 1안 및 2안임

- 한편, 산업용 인하 규모를 1안 및 2안보다 더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산업용 목표 요금을 설정해야 하는데, ②서울시의 산업용 요금과 동일해지도록 인하하는 경우를 예상해볼 수 있음. 즉, 서울시의 산업용 요금과 일치시키는 대신, 주택난방용 요금을 인상하거나, 전 용도의 요금을 정률적으로 인상시키거나, 기본요금 인상과 더불어 사용량 요금을 인상시키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음. 이러한 대안은 아래 3안에 해당됨
- 인천시의 양사 간의 수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인천도시가스(주)의 평균소매마진을 증가시키고, (주)삼천리의 평균소매마진을 감소시켜, 양 사 간의 평균소매마진 차이를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함. 이를 통해, 인천도시가스(주)의 평균소매마진은 당사의 인정공급비용에 미달하는 금액이 감소하고, (주)삼천리의 평균소매마진은 당사의 인정공급비용을 초과하는 규모가 줄어들 수 있음

다. 대안별 결과

- 수지격차 완화효과가 가장 큰 대안은, 산업용 요금 인하폭을 확대하여, 각 사의 평균소매마진이 각 사의 인정공급비용과 가장 근접해지도록 만드는 방법인 3안임 - 이 중에서도, 기본요금은 인상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되, 산업용 요금이 인하되는만큼 주택난방용 사용량 요금이 인상되게끔 만드는 방안의 효과가 가장 큼

〈표 40〉 산업용 요금 인하 수준에 따른 수지격차 완화 효과

산업용 요금 인하 수준	주택난방용 변동 여부	산업용 요금 변동 총액 (백만원)	산업용 요금 (원/m ³)	수지격차 완화 효과 (백만원)	
1안) 기본요금 10원 인상 수준	유지	(137)	▼0.27	▼35	
2안) 기본요금 160원 인상 수준	유지	(2,186)	▼4.30	▼511	
	전 용도 인하	(505)	▼0.99	▼108	
3안) 서울시수준	기본요금 유지	(2,972)	▼5.84	단독 인상	▼772
				전 용도 인상	▼716
	기본요금 10원 인상			단독 인상	▼769
				전 용도 인상	▼715
	기본요금 160원 인상			단독 인상	▼715
				전 용도 인상	▼700

- 1인인 산업용 요금 인하 수준을 기본요금 10원 인상수준에 맞추는 경우, 산업용 요금변동 총액은 137백만원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산업용 요금은 0.27원/m³이 인하됨. 수지격차 완화 효과는 35백만원임
- 산업용 요금 인하 수준을 서울시 기본요금인 1,000원을 한도로, 기본요금 160원 인상수준에 맞추는 2안의 경우, 요금변동 총액은 2,186백만원이며, 산업용 요금 인하 규모는 4.30원/m³임. 한편, 기본요금 인상되는 만큼 전 용도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산업용 요금 인하 규모는 0.99원/m³이며, 수지격차 완화 효과는 108백만원으로 분석됨
- 수지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큰 기본요금은 유지하되, 산업용 요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우, 사용량 요금은 5.84원/m³ 인하되며, 인하되는 만큼 주택난방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수지격차 완화효과는 772백만원으로 가장 커지게 됨. 한편, 인하폭을 주택난방용 외 전 용도 요금 인상으로 흡수하는 경우, 수지격차 완화효과는 716백만원으로 소폭 감소함
- 기본요금을 경기도 또는 서울시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동시에 산업용 요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우, 주택난방용 요금의 인상폭이 기본요금 유지 시 대비 감소하여, 수지격차 완화효과가 일부 희석되나, 수지격차 완화 효과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임
 - 산업용 요금 인하 규모를 기본요금 10원 인상 및 주택난방용 사용량 요금 인상으로 모두 흡수하는 경우, 수지격차 완화효과는 769백만원으로 나타남. 전 용도 요금 인상하는 경우에는 715백만원임
 - 산업용 요금 인하규모를 기본요금 160원 인상 및 주택난방용 사용량 요금 인상으로 조정하는 경우, 715백만원의 수지격차 완화효과가 나타나며, 전 용도 요금 인상 시에는 700백만원의 효과가 나타남

〈표 41〉 산업용 요금 인하 수준에 따른 회사별 평균소매마진 격차

구 분			조정 시	수지격차 완화 방안									
				1안		2안		3안					
				기본요금 10원 인상		기본요금 160원 인상		기본요금 유지		기본요금 10원 인상		기본요금 160원 인상	
				주택 난방용 유지	주택 난방용 유지	전 용도 인하	주택 난방용 인상	전 용도 인상	주택 난방용 인상	전 용도 인상	주택 난방용 인상	전 용도 인상	
기본요금 (원/월·세대)			840	850	1,000	1,000	840	840	850	850	1,000	1,000	
원/MJ	사용량 요금	주택난방용	1.6364	1.6364	1.6364	1.5951	1.7745	1.7095	1.7682	1.7061	1.6729	1.6557	
		산업용	0.9240	0.9177	0.8231	0.9006	0.7868	0.7868	0.7868	0.7868	0.7868	0.7868	
	평균 소매마진	인천도시	1.7216	1.7225	1.7362	1.7246	1.7437	1.7421	1.7436	1.7421	1.7421	1.7416	
		(주)삼천리	1.4995	1.4983	1.4805	1.4956	1.4708	1.4729	1.4709	1.4729	1.4729	1.4735	
원/m ³	사용량 요금	주택난방용	69.69	69.69	69.69	67.93	75.58	72.81	75.31	72.66	71.25	70.52	
		산업용	39.35	39.08	35.05	38.36	33.51	33.51	33.51	33.51	33.51	33.51	
	평균 소매마진	인천도시	73.32	73.36	73.94	73.45	74.26	74.19	74.26	74.19	74.19	74.18	
		(주)삼천리	63.86	63.81	63.06	63.70	62.64	62.73	62.65	62.73	62.73	62.76	
수지격차 (백만원)	인천도시가스(주)		(2,202)	(2,167)	(1,691)	(2,094)	(1,430)	(1,486)	(1,433)	(1,487)	(1,487)	(1,502)	
	(주)삼천리		2,202	2,167	1,691	2,094	1,430	1,486	1,433	1,487	1,487	1,502	
양사 평균소매마진 격차 (원/m ³)			9.46	9.55	10.89	9.75	11.62	11.47	11.61	11.46	11.46	11.42	

라. 추가고려 방안

- 상기의 산업용 요금 인하 대신, 구간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산업용 구간요금제를 생각해볼 수 있음. 즉, 인천도시가스(주)와 (주)삼천리 모두 산업용 수요자 별로 판매량 편차가 매우 큰 편이므로, 대단위 수요자에 대한 할인요금을 적용할 경우에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남

〈표 42〉 산업용 구간별 판매량 (단위: 천m³)

구 분	산업용 판매량 (2019년)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	계	비중
연간 2백만m ³ 미만	62,897	59,379	122,276	22%
~4백만m ³ 미만	14,732	22,473	37,205	7%
4백만m ³ 이상	179,030	221,351	400,382	72%
계	256,659	303,203	559,863	100%

- 위에서 살펴본 산업용 요금 인하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음. 산업용 요금의 인하폭이 가장 큰 3안의 경우, 구간별 차이금액은 3.90원/m³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다만, 산업용 요금을 단일(정액요금) 운영하지 않고 구간별 차등요금을 적용할 경우, 양 사의 각 구간에 해당되는 판매물량이 상이하므로, 여기서 수지격차가 소폭 발생할 수 있음

〈표 43〉 산업용 판매량 구간별 차등요금안 (단위: 원/m³)

구 분	1안		2안		3안
	기본요금 10원 인상	기본요금 160원 인상			
	주택난방용 유지	주택난방용 유지	전 용도 인하		
연간 2백만m ³ 미만	39.35	39.35	39.35	39.35	
~4백만m ³ 미만	39.17	36.48	38.69	35.45	
4백만m ³ 이상	38.99	33.61	38.02	31.55	
계	39.08	35.05	38.36	33.51	
구간별 차이	▼0.18	▼2.87	▼0.66	▼3.90	

[구간요금 적용 시 추가로 발생하는 수지격차(2019년 실적 기준)] (단위: 백만원)

인천도시가스(주)	2	33	8	44
(주)삼천리	(2)	(33)	(8)	(44)